

## 제 17 장 기술 협력

### 제 17.1 조 목적

이 장의 목적은, 특히 다음을 목표로, 이 협정의 이행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 긴밀한 기술 협력의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다.

- 가.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,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,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
- 나. 부속서 17-가에 상세히 설명된 중소기업 및 벤처 스타트업의 개발 지원<sup>1</sup> 및 증진
- 다.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더 호의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, 그리고
- 라. 자국의 정책과 개발전략에 규정된 우선순위를 이행하도록 양 당사국의 노력을 보완하는 것을 지원

### 제 17.2 조 방법 및 수단

1.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도구,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, 각국의 법,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.

---

<sup>1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장에 규정된 “지원”은 반드시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.
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않는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경우 협력을  
장려하고 증진할 것이다.

가.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

나. 과학자, 연구원 및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

다. 기술 관련 정책, 법, 규칙, 표준, 인증,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 등) 제도 및  
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환

라. 세미나, 심포지엄, 회의, 교육 훈련 및 그 밖의 기술 관련 활동의 공동 주최

마. 협력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

바. 그들의 기술 이전 기관 간의 공동 활동, 그리고

사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

### 제 17.3 조

#### 협력 분야

1. 기술 및 스타트업 협력은 다음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를  
포함할 것이다.

가. 항공우주

나. 의약품

다. 정보보안

라. 사이버보안

마. 가상현실

바. 빅데이터

사. 재생가능에너지

아.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

자. 농업과 식량

차. 인공지능, 그리고

카. 보건의료(제약품, 의료 기기 및 화장품을 포함한다)

2. 잠재적으로, 기술의 범위는 기초 연구, 시제품, 실제 적용, 상업화 등의 단계를 포함하여 기술 성숙도의 전 과정에 걸쳐 확장된다.

#### 제 17.4 조

#### 협력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.

2. 이 장의 목적상, 위원회의 기능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협력 활동을 위한 작업 계획을 개발하는 것

나.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

다.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

라.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을 점검하는 것

마.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의 목적을 이행하고 달성을 보장하고 점검하는 것

바.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, 협력 사업 및 그 밖의 협력 계획 제시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, 그리고

사. 공동위원회가 부여한 그 밖의 기능

3. 위원회는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연 1 회 회합한다.

4.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.

### 제 17.5 조

#### 접촉선

1.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 접촉선은 이 장의 운영을 위하여 각자의 정부 부처 및 기관, 비즈니스 분야 대표 그리고 교육 및 연구기관과 함께 작업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.

2.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접촉선이 지정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이스라엘의 경우, 경제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또는 양 당사국이 통보하는 부서

## 제 17.6 조

### 분쟁 해결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

부속서 17-가  
벤처 스타트업 협력

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통하여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- 가.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
- 나. 다음과 같이 양 당사국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 간 모범 사례 교환
  - 1) 한국의 경우, 창업진흥원, 창조경제혁신센터, 그리고
  - 2) 이스라엘의 경우, 이스라엘 혁신청,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
- 다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, 엑셀러레이터 및 협작투자 기금과 같은 수단으로 양 당사국의 스타트업 간 협작투자의 창출 지원
- 라. 회계, 과세 및 인적자본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양국의 법과 규정을 통하여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지사 설립을 위하여 지원 시스템 마련
- 마. 포럼, 세미나, 회의, 박람회와 공동혁신 및 기술의 날, 테모데이 및 스타트업 밋업과 같은 그 밖의 스타트업 관련 행사의 공동 주최, 그리고
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

협력위원회는 이 부속서에 따른 모든 활동을 조정한다.